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여성가족과-48 79 |
| 결재일자 | 2016.6.28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| 보도여부 | |

| | |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보육지원1팀장 | 여성가족과장 | 생활복지국장 |
| 손시내 | 정진숙 | 김기운 | 06/28 강대형 |
| 협 조 | | | |
| | 보육지원2팀장 | 주달순 | |

어린이집 집단휴원 대응방안계획

2016.6.28.

강 북 구

어린이집 집단휴원 대응 방안

1. 목 적

맞춤형 보육 시행(7.1)에 따른 어린이집 단체의 집단휴원 예고가 있어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.
집단휴원 등 각종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함

2. 대응방안

① 집단휴원 대응체계 구축

- 집단휴원 상황대응반 구성

| 직위/성명 | 임 무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| ○휴원에 따른 조치사항 결정 | |
| 보육지원1팀장 정진숙 | ○어린이집 동향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| |
| 보육지원2팀장 주달순 | | |
| 행정7급 김보성(민간총괄) | ○각 시설 현황파악 및 보고 | |
| 행정7급 정유진(국공립총괄) | (※시설별 담당자에게 안내 후, 총괄이 수합하여 보고) | |
| 사회8급 손시내(가정총괄) | ○연합회 회장과 상시연락 | 맞춤형보육 총괄 |

- 집단휴원 자제활동 전개
 -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단휴원 자제 공문 발송
- 휴원 관련 상황 파악 및 보고
 - 어린이집 관련 단체 동향, 휴원 상황 등을 매일 파악

② 불법휴원 어린이집에 대한 엄정 대처

-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, 부모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원 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
 - * (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)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
- 불법휴원 어린이집에 대해 지체없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실효성 확보

<전면 휴원의 경우>

- (휴원 전) 휴원 예정 어린이집 파악, 휴원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
- (휴원 시) 증거 확보하여 정상운영 하도록 지체없이 시정명령하고, 시정명령 이후에도 계속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운영정지
 - *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로 대체 가능(3천만원 이하)

<자율 등원 등으로 교사 배치기준 위반 시>

-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도록 지체없이 시정명령하고, 시정명령 이후에도 계속 위반 시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운영정지
- 휴원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
 - 국고, 서울시,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형태의 비용은 우선 중단* 가능
 - * 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)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
 - 복지부, 서울시, 강북구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서 제외
 - 국공립, 사회복지법인 등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 검토

③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전원조치 실시(전면 휴원 시)

- (개요) 휴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설별 담당자의 관리 하에 휴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으로 긴급전원조치 실시
 - 기존 어린이집 퇴소 후 우리구가 안내하는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하여 휴원일에 이용하고, 휴원 종료 시 기존 어린이집에 재입소
 - * 담당자가 안내하는 어린이집 입소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소
- (보호자 신청) 긴급전원조치를 원하는 보호자는 기존 이용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우리구에 긴급전원조치 신청
 - 보호자는 휴원일 전(前) 일까지 긴급전원조치 신청
 - * (예) 28일 휴업인 경우 27일까지 신청
 - 휴원일 전(前) 일 기존 이용 어린이집에서 퇴소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, 이미 보육료 결제를 마친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**
 - * (예) 28일 휴업인 경우 27일까지 신청 후 퇴소절차 진행
 - ** 보육료는 입·퇴소월에 일할계산되나, 당겨결제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치 선결제됨
- (전원조치) 시설별 담당자는 관할 내 어린이집 정원 현황 및 휴원 현황을 사전 파악(6.21~22)
 - 휴원하지 않고 여유정원이 있는 어린이집에 입소 안내
 - * 필요시 관할 외 어린이집에 입소 안내
 - 당월보육료를 결제한 경우 보호자가 휴원일 전(前) 일 기존 이용 어린이집에서 퇴소절차를 진행하고, 당월보육료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휴원일 전(前) 일 시설 담당자가 직권으로 퇴소 조치
 - 휴원일 당일 입소 조치 및 퇴소 조치, 휴원일 익일 기존 이용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조치를 시설별 담당자가 직권으로 실시
 - * (예) 28일 휴업인 경우 27일 퇴소조치, 28일 입소조치, 29일 기존 이용 어린이집 입소조치
 - 긴급전원조치 결과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파견 요청

- 해당시설 담당자는 긴급전원조치 후 조치결과를 서울시에 즉시 통보
- (대체교사)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대체교사 파견 지원
- 휴원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파견 중이던 대체교사를 우선 복귀시켜 긴급전원조치를 실시한 어린이집에 파견

참고1

어린이집 위법적인 집단행동 상황별 대응방안

| 단계별 상황 | 주요 위반사항 | 행정처분 등 대응방안 |
|--|--|--|
| 집단휴원 예고 | | ○ 집단 휴원 등에 동참하지 않도록 협조 및 당부 (* 지자체, 보육단체) |
| 차량운행 중단 | ○어린이집운영기준 위반 (* 시행규칙 별표8 차목) -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차량 운행 중단 금지 | ○ 시정명령→ 시정명령 후 자격정지 - 3개월, 6개월, 1년 처분 가능 ○ 시정명령 후 위반 시 시설운영정지 - 15일, 1개월, 3개월 처분 가능 |
| | ○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등 관련 법률 준수 필요 | ○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전부/일부 취소 -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(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0조) |
| 자율등원 등 부분 휴원단계 (* 보육교사 연가 투쟁) | ○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 (* 시행규칙 별표2) 1.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, 2. (다목)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 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 번제로 실시 | ○ 시정명령: 3시간 이내 복귀명령 ○ 시설운영정지 처분 - 3개월, 6개월, 1년 처분 가능 *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|
| 전면 휴원단계 | ○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-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 금지 (*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다목) | ○ 시정명령 ○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조치 - (1차) 운영정지 1년, (2차) 시설폐쇄 가능 |

참고2

휴지, 휴원절차 및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

| 상황 | 적법 절차 | 위반시 행정처분 |
|------------------|--|---|
| <p>휴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다목 -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모 동의를 받아 운영일 조정가능 - 천재지변, 감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 있을시 부모 동의 없이 휴원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- 시정명령 -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조치 * (1차) 운영정지 1년, (2차) 시설폐쇄 가능 |
| <p>휴지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- 휴지 2개월전 지자체에 신고 - 전원조치 계획서 등 제출 - 전원조치 이행 완료 후 휴지 - 전원조치 미이행시 미신고로 처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없이 운영중단 한 경우에 해당 - 시정명령 -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조치 * (1차) 운영정지 1년, (2차) 시설폐쇄 가능 |